

2016. 3.14.(월) ~  
3.18.(금) / 5일간

# 제27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 성 군 의 회

## 목 차

1. 장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 장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3.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 5
4. 장성군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5. 장성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7
7. 장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8
8.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9.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를 유치할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10.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11. 장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12. 장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2
13. 장성군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 동의안 ..... 14
14.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15

## 심사결과

의안명	의결결과
○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 장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 가결
○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 가결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원안 가결
○ 장성군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장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장성군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가결
○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 장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장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 가결
○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

## 주요내용

### 1. 장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6. 3. 7.
- 발 의 자 : 고재진, 김옥 의원
- 제안이유
  - 후반기 원 구성 완료 후에 제1차 정례회가 집회될 수 있도록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자를 변경하고, 회계연도 개시일 10일전에 본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 변경
  - 대통령 선거 등 국가 중대사가 있을 경우에 정례회의 회기를 감안하여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주요내용
  -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1일로 변경
  -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3일로 변경
  - 대통령 선거 등 국가중대사가 있을 경우 정례회 집회일자를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정례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 의결결과 : 수정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3. 18.)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17. 1. 1 시행)으로 제1차 정례회 시기가 당초 6, 7월에서 5~6월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조례안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7월 1일에서 6월 14일로 하고,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에”에서 “그 다음날”을 “ 그 전일”로 수정하여 의결함.
  - 조례안 수정조문 대비표

## 조례안 수정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p>제4조(집회)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u>토요일</u>이거나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p> <p>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u>7월 1일</u>에 집회한다. 다만,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10월에 집회할 수 있다.</p> <p>2. (생략)</p>	<p>제4조(집회)----- ----- ----- <u>토요일</u> ----- 일이거나 공휴일인 때는 그 전 일에 -----.</p> <p>1. ----- <u>6월</u> <u>14일</u>-----.</p> <p>----- ----- -----</p> <p>-----.</p> <p>2. (조례안과 같음)</p>

### 2. 장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발의일자 : 2016. 3. 8.
- 발 의 자 : 김행훈, 김희식 의원
- 제안이유
  - 「장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조문을 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서식을 정비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 → 제60조(안 제1조)
  -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변경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운영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3. 18.)

### 3.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 발의일자 : 2016. 3. 7.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법률 제11865호-2014.6.5.)으로 건축 진흥을 위한 특별회계 조례 제정의 기준이 마련되고 국민권익위원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전용사용 권고에 의해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문화 발전에 사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세입 -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보조금, 이행강제금 징수액, 기부금 등
  - 세출 - 불법건축물 단속, 저소득층 주거안정, 건축 진흥비용 사용
- 법적근거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31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3. 18.)

### 4. 장성군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6. 3. 7.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장성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진원면(산동리)과 남면(삼태리)

의 면계에 걸쳐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그 경계를 지역 주민의 정서와 현장여건을 반영, 경계를 조정하여 지역주민 및 입주업체의 민원해소와 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수 있도록 면계 및 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명칭과 구역(안 제2조) : 장성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내 진원면 산동리 일부(13필지 9,193㎡)를 남면 삼태리로 편입하고, 남면 삼태리 일부(32필지 8,923㎡)를 진원면 산동리로 편입함.
- 남면 삼태3리를 폐지하고 삼태2리로 통합.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3. 18.)

5. 장성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6. 3. 7.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장성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행정리(남면 삼태 2, 3리)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장성군 이장정원을 292명에서 291명으로 하고
- 남면 삼태리 이장 3명중 1명을 감하여 2명으로 함

○ 조정내용

(단위 : 명)

읍 면	리 명	정원 조정			조 정 내 용
		현행	개정	증감	조 정
남 면	삼태3리	1	-1	-1	삼태 2리로 행정구역 통합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3. 18.)

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발의일자 : 2016. 3. 7.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12조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공실버주택 및 실버복지관 건축

○ 주거와 복지 및 의료·소득활동 등이 결합된 신개념 복합시설인 공공 실버 주택 및 실버복지관 조성

○ 노인의 주거생활 안정성 및 복지 수준 향상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3. 18.)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사 업 명	당 초		증 감		변경(안)	
	필지수 /동수	면적(m <sup>2</sup> ) 토지/건물	필지수 /동수	면적(m <sup>2</sup> ) 토지/건물	필지수 /동수	면적(m <sup>2</sup> ) 토지/건물
계	26필지 / 5동	654,537 / 3,530	11필지 / 2동	4,079 / 4,850	37필지 / 7동	658,616 / 8,380
황룡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8필지 / 1동	1,613 / 100	-	-	8필지 / 1동	1,613 / 100
축령산 휴양관광단지 조성	6필지 / 2동	638,482 / 2,300	-	-	6필지 / 2동	638,482 / 2,300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3필지 / 1동	2,765 / 330	-	-	3필지 / 1동	2,765 / 330
실증 시험포장 부지 매입	4필지	6,524	-	-	4필지	6,524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5필지 / 1동	5,153 / 800	-	-	5필지 / 1동	5,153 / 800
공공실버주택 및 실버복지관 건축	-	-	11필지 / 2동	4,079 / 4,850	11필지 / 2동	4,079 / 4,850

○ 공공실버주택 및 실버복지관 건축

(단위 : m<sup>2</sup>, 천원)

구 분		필지수/동수	면적	추정가격	비 고
취 득	계	11필지 / 2동	8,929	11,430,000	
	토 지	11필지	4,079	1,397,097	
	건 물	2동	4,850	10,032,903	

7. 장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일자 : 2016. 3. 7.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수립시기(매년), 수립주체, 유지보수 등
- 어린이놀이시설 행위의 제한에 관한사항(안 제4조)
  - 이용자 및 시설내의 행위제한 사항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이행 및 안전점검에 관한사항(안 제5조 ~ 제6조)
  - 점검시기(월1회), 점검방법, 점검결과 조치 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망 구축에 관한사항(안 제7조)
  - 안전지킴이 위촉, 자원봉사활동 등
- 어린이놀이시설 업무분담에 관한사항(제8조)
  - 관리주체에 대한 군수의 관리·감독
- 어린이놀이시설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어린이놀이시설 업무분담에 관한사항(제8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우수자 격려, 관계법령 준용

■ 법적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3. 18.)

## 8.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6. 3. 7.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장성군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함.
- 주요내용
  -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호)
    - 제3항 상황실장을 기획감사실장 ⇒ 재난안전실장(당연직)
    -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
  - 수당등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22조 제2항)
    -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참석한 경우 통합방위협의회위원 및 자문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지급
- 법적근거
  - 「통합방위법」 제5조제2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3. 18.)

## 9.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를 유치할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6. 3. 7.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지방재정법 등 유사한 사후관리 규정이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어 관련조문 삭제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2호, 시행 2015.7.21.)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

▪ **주요내용**

- 투자기업이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 사전 승인사항 삭제(제22조제3항)
-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수도권 대상지역과 일치(안 별표)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제외
  - 경기도 고양시,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 **법적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3. 18.)**

10.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일자 : 2016. 3. 7.**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군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교통취약지역에 『100원 행복택시』를 도입하여 오지마을 주민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군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교통오지마을
  - 거리 :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1km이상인 마을
  - 마을 : 5개면 18개마을
- 운행횟수 : 개인별 월/4회(년48회)
- 택시요금 : 장성군수와 택시운수사업간 협약체결에 의한 결정
- 이용권 발행 : 군에서 제작 배부

- 지원 및 정산 : 사업자 및 면 청구서 대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토록 규정함.
- 법적근거
  - 「전라남도 100원 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3. 18.)

## 11. 장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6. 3. 7.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상위법령 제명 개정(2015. 6. 3시행)에 따라 『측량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명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안 제1조)
    -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로 조문정비
  - 축약사항 조항변경(안제1조 및 제2조)
    - 제1조의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축약사항을 제2조에 반영
  -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여 위임하지 않는 사항 삭제(안제2조제3항)
- 법적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3. 18.)

## 12. 장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발의일자 : 2016. 3. 7.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상위 시행령 개정(2009. 7. 7. 시행)에 따라 우리 군의 경우 해당 권역 및 지역에서 제외되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수 없어 폐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2005년 해당 조례 제정 시에는 시행령 조항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이었으나, 시행령 개정 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공장에 대한 규정은 이미 도시계획조례에서 운영 중으로 과도한 규제 폐지

▪ 주요내용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현황 및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우선해제 시설 검토
-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 보고
- 미집행시설 현황
  - 총 1,604개소(면적:32,480,344㎡)의 군계획시설이 결정
  - 전체의 약 37%인 595개소(면적:29,731,431㎡) 개설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전체 시설 중 25%인 406개소, 1,827,015㎡
  - 예상사업비 : 약 388,475백만원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3. 18.)

### 13. 장성군 통합관계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 동의안

- 발의일자 : 2016. 3. 7.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운영중인 통합관계센터를 경비업 허가를 득한 관제요원을 전문지식과 책임성, 경험이 풍부한 용역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실시간 관제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관제요원 매년 기간제 채용으로 2년이상 근무자에 대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문제해소
  - 단순행정 관리사무인 관제업무를 정규직(무기계약직) 운영으로 인력 및 예산낭비 초래
  - 위탁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기여 및 관제요원의 전문성 확보
  - 수당등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22조 제2항)
    -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참석할 경우 통합방위협의회위원 및 자문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지급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계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제22조(통합관계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 장성군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등)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3. 18.)

#### 14.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발의일자 : 2016. 3. 7.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2016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 재원의 변경에 따른 조정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그리고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구축과 상하수도 확충 및 나노산단 기반 조성, 재해 위험시설을 비롯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을 위함
- 주요내용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550억 6천만원으로 기정액 3,370억 3천 2백만원 보다 180억 2천만 8백만원이 증액
  - 일반회계는 3,398억 5천 1백만원으로 180억 8천 1백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52억 9백만원으로 5천 3백만원이 감액 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355,060	337,032	18,028	5.35%	
일 반 회 계	339,851	321,770	18,081	5.62	
특 별 회 계	15,209	15,262	△53	△0.35	
의료급여사업	1,221	1,274	△53	△4.20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2,455	2,455	0	0	
주차장 운영	3,643	3,643	0	0	
공영터미널운영 및 관리	128	128	0	0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65	65	0	0	
드림빌	2,394	2,394	0	0	
주택사업	72	72	0	0	
주민소득지원 기금	346	346	0	0	
상수도사업	4,885	4,885	0	0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3. 18.), 별첨 참조



**별첨**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1. 세 입 : 355,059,937천원

가. 삭 감 : 해당없음

나. 증 액 : 해당없음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인정액
		세 입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355,059,937	-	-	-	355,059,937
일반회계	339,851,433	-	-	-	339,851,433
특별회계	15,208,504	-	-	-	15,208,504

라. 삭감조서 : 해당없음

마. 증액조서 : 해당없음

2. 세 출 : 355,059,937천원

가. 삭 감

1) 일반회계 : 해당없음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나. 증 액

1) 일반회계 : 해당없음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인정액
		세 출			
		삭 감 액	증 액	순삭감액	
계	355,059,937	-	-	-	355,059,937
일반회계	339,851,433	-	-	-	339,851,433
특별회계	15,208,504	-	-	-	15,208,504